

안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김동수의원)

의안 번호	2483
----------	------

제출년월일 : 2014. 1. 7.
제출자 : 김동수, 김철진, 나정숙, 박은경,
성준모, 송두영, 이민근, 이형근,
전준호, 정승현, 황효진(11인)

□ 제정이유

- 2008년부터 안산시 지역치안협의회가 구성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그동안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가 없어 지역주민의 안전보호 등 지역의 선진질서 확립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어,
- 지역치안협의회를 제도화하고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 범죄예방, 주민의 안전보호 등 관련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과 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 안산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기능, 운영, 해촉,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안 제7조)
-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지역치안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제정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경찰법, 치안행정협의회 규정, 지방자치법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붙임2의 비용추계 예산안 참고

안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지역의 질서 확립과 시민의 안전 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산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안산시(이하 “시”라고 한다) 지역의 질서 확립과 시민의 안전보호 환경 조성으로 살기 좋은 안산을 만들기 위하여 안산시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장, 안산시의회 의장,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상록경찰서장, 단원경찰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단체의 대표

2.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3.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원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단체 대표의 경우 그 단체의 대표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과 안전 관련 주요 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과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 건의사항

4. 그 밖에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안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회의록 작성 및 보존
 5.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8조(실무협의회)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3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소속 기관과 위촉직 위원의 소속 기관·단체의 실무 책임자로 구성하는 지역치안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시장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등)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위촉된 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새로이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불임 2〉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안산시 지역치안협회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제10조
- 안산시 지역치안협회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제11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수당 등 지급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산출기초	금 액
총 계		14,400
법질서 확립		8,000
홍보물 제작		5,000
및		
캠페인 추진		3,000
소 계		
총 계		6,400
치안협의회		
회 의 개 최		
위원회 수당		6,400
소 계		

나. 재원조달방안 : 안산시 자체 재원

안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483
----------	------

제안년월일 : 2014. 1. 23.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장

□ 수정이유

-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목적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조문을 일부 수정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연임규정을 신설함
- 지역치안협의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 설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수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목적에 안전도시·안심도시 사항을 신설하고 일부 조문을 수정함(안 제1조)
- 지역치안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연임 제한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
- 지역치안실무협의회 설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수정함(안 제8조)

안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중 “시민의 안전 보호를 위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를 “시민의 안전 보호를 위한 안전도시 · 안심도시 조성을 위하여”로 한다.

제3조제4항중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중 “지역치안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를 “지역치안실무협의회를 둔다”로 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원 안	수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지역의 질서 확립과 시민의 안전 보호를 위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안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p> <p>시민의 안전 보호를 위한 안전도시·안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p>
<p>제3조(구성) ① - ③ (생략)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원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u>2년으로</u>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단체 대표의 경우 그 단체의 대표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3조(구성) ① - ③ (원안과 같음) ④ ----- ----- <u>2년으로</u>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p>
<p>제8조(실무협의회)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3조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소속 기관과 위촉직 직원의 소속 기관·단체의 실무 책임자로 구성하는 지역치안실무협의회를 <u>둘 수 있다</u>.</p>	<p>제8조(실무협의회) ----- ----- ----- ----- ----- 둔다.</p>